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1일, 이연희의원 등 2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8. 1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 8.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8. 21.) 상정, 소위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연희의원)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도서벽지·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명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구체적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에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추가하고, 발명교육 지원사업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u> <u>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u> <u>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u> <u>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u> <u>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u>	<u>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u> <u>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u> <u>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u> <u>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u> <u>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u> <u>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u> <u>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u> <u>8.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u> <u>② 국가 및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u> <u>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u> <u>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u> <u>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u> <u>4.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u> <u>5.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u>

현행법 제8조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발명교육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육 지원사업의 대상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및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허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들을 위한 발명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¹⁾, 더욱이 발명교육에 필수적인 ‘교재 및 교구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발명교육 지원대상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특수교육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 특허청은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발명교육을 위하여 장애 유형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조인력 및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나,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임.

2) 일부 특수교육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발명교육을 시범실시하였으나,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등은 미비한 실정임.

(*) 경희학교(특수교육, '21), 여수여명학교(특수교육, '21·'22)

(**) 시각·청각·지적·지체장애 등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지원 대상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행 + <u>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의 자녀</u>
지원 사업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현행 + <u>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u>

현재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취약계층 대상 사업(예를 들면,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의 자녀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관련 사업으로 특허청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사업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교원·학생 발명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대상에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발명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다만, 개정안 제8조제1항제7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발명교육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② 수급권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안 제8조제1항제7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³⁾⁴⁾.

참고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21대국회에 발의(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제2122379호)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금번 개정안은 21대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⁵⁾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3)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대상은 아니나 그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함.

4) (유사 입법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5) 특허청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안 제8조제1항제7호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 제8조제1항제7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발명교육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급권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함(안 제8조제1항제7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자체는”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 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 조에 따른 도서·벽 지에 소재하고 있 는 각급학교의 학 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 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교 밖 청 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 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 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교육 취약계층 아동·청 소년에 대하여 발 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교 육진흥법」 제2 조에 따른 도서 ·벽지에 소재하 고 있는 각급학 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 설의 아동 3. 「학교 밖 청소 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학교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 ----- ----- ----- ----- ----- ----- 1. ~ 6. (개정안과 같음)

<u>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u>	<u>밖 청소년</u>	
<u>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u>	<u>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u>	
<u>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u>	<u>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u>	
<u>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u>	<u>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u>	
<u>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u>	<u>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u>	<u>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u>
	<u>8. 그 밖에 발명교</u>	<u>8. (개정안과 같음)</u>

	<u>육이 필요한 교</u> <u>육취약계층 아동</u> <u>· 청소년</u> ② <u>국가 및 지자체</u> <u>는 제1항에 따른</u> <u>대상에 대하여 각</u> <u>호의 지원사업을</u> <u>할 수 있다.</u> 1. <u>발명교육을 위한</u> <u>강사 파견</u> 2. <u>발명교육 프로그</u> <u>램 개발 및 보급</u> 3. <u>발명교육 관련</u> <u>행사의 개최·운</u> <u>영</u> 4. <u>발명교육을 위한</u> <u>교재 및 교구 지</u> <u>원</u> 5. <u>그 밖에 교육취</u> <u>약계층 아동·청</u> <u>소년의 발명교육</u> <u>을 지원하기 위</u> <u>한 사업</u>	② <u>국가 및 지방자</u> <u>치단체는 제1항에</u> <u>따른 대상에 대하</u> <u>여 다음 각 호의</u> <u>지원사업을 할 수</u> <u>있다.</u> 1. ~ 5. (개정안과 같음)
--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9.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4.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5.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u>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u> <u>· 운영</u> <u>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u> <u>· 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u> <u>하기 위한 사업</u>	<u>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u> <u>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u> <u>학교 밖 청소년</u> <u>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u> <u>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u> <u>자녀</u> <u>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u> <u>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u> <u>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u> <u>과 그 자녀</u> <u>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u> <u>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u> <u>수교육대상자</u> <u>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u> <u>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u> <u>는 그 자녀</u> <u>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u> <u>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u> <u>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u> <u>9.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u> <u>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u> <u>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u> <u>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u> <u>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u> <u>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u>
--	--

	<u>보급</u> <u>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u> <u>· 운영</u> <u>4.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u> <u>구 지원</u> <u>5.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u> <u>· 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u> <u>하기 위한 사업</u>
--	---